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9. 20 선고 2017가합509510 판결 [보증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8. 4. 11 선고 2017나206212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9. 20 선고 2017가합509510 판결

전 문

원고두산중공업 주식회사

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

변론 종결2017. 8. 21.

판결 선고2017. 9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244,760,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10. 1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
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

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계약의 체결

- 1) 원고는 소외 라진건설 주식회사(이하 '라진건설'이라 한다)에게, 2008. 7. 15. 순천 왕지동 산 147-1 일원에 순천 두산 We've 아파트 건설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 중 토목 및 가시설 공사(이하 '제①-1공사'라 한다)를 하도급 준 다음, 2010. 1. 12. 위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8. 7. 16.부터 2010. 12. 31.까지, 공사대금을 4,767,841,677원, 계약이행보증을 계약금액의 10%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, 2009. 11. 12.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(이하 '제①-2공사'라 하고, 제①-1, 2 공사를 합하여 '제①공사'라 한다)를 공사기간 2009. 11. 13.부터 2011. 3. 31.까지, 공사대금 1,115,223,027원,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%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.
- 2) 원고는 2009. 5. 7. 소외 우등건설 주식회사(이하 '우등건설'이라 한다)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 1단지 공사(이하 '제②공사'라 한다)를 공사기간 2009. 5. 8.부터 2011. 3. 31.까지, 공사대금 1,860,587,886원,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%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.
- 3) 원고는 소외 성진이엔씨 주식회사(이하 '성진이엔씨'라 한다)에게 2010. 1. 14. 이 사건 공사 중 1단지 타일공사(이하 '제③-1공사'라 한다)를 공사기간 2010. 1. 15.부터 2011. 3. 31.까지, 공사대금 5,352,000,907원,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%로 정하여 하도급 주고, 2010. 6. 14. 이 사건 공사 중 계단실 타일공사(이하 '제③-2공사'라 하고, 제③-1, 2 공사를 합하여 '제③공사'라 한다)를 공사기간 2010. 6. 15.부터 2011. 1. 31.까지, 공사대금 919,017,819원,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%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.
- 4) 원고는 2009. 10. 12. 주식회사 헨디(이하 '헨디'라 한다)에게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창원기숙사 2차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(이하 '제④공사'라 하고, 제① 내지 ④공사를 모두 합하여

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'라 한다) 하도급 주었고, 2010. 7. 22. 위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9. 10. 13.부터 2011. 2. 28.까지, 공사대금을 2,592,920,000원,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%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

라진건설, 우등건설, 성진이엔씨, 헨디(이하 '이 사건 각 하도급업체'라 한다)는 위 각 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계약(아래 순번에 따라 '제○보증계약'이라 하고, 통틀어 칭할 때에는 '이 사건 각 보증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로부터 각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.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약관에는 '보증기간 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'를 보증사고로 규정하면서, 보증금 지급한도를 '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'으로 정하고, 피고는 계약자가 보증서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이 사건 각 보증계약

①-1	라진건설	제①-1공사	2008. 7. 17.	2008. 7. 15. ~ 2010. 12. 31.	294,421,541
2009. 2. 23.	2009. 2. 23. ~ 2010. 12. 31.	160,443,438			
2009. 11. 24.	2009. 11. 23. ~ 2010. 12. 31.	17,782,262			
2010. 1. 18.	2010. 1. 12. ~ 2010. 12. 31.	4,136,925			
①-2		제①-2공사	2009. 11. 13.	2009. 11. 12. ~ 2011. 3. 31.	111,523,300
②	우등건설	제②공사	2009. 5. 7.	2009. 5. 7. ~ 2011. 3. 31.	186,058,788
③-1	성진이엔씨	제③-1공사	2010. 1. 19.	2010. 1. 14. ~ 2011. 3. 31.	535,200,090
2010. 6. 15.	2010. 6. 14. ~ 2011. 1. 31.	91,901,781			
④	헨디	제④공사	2009. 10. 14.	2009. 10. 12. ~ 2011. 2. 28.	240,790,000
2010. 1. 25.	2009. 10. 13. ~ 2011. 2. 28.	10,582,000			

①-1	라진건설	제①-1공사	2008. 7. 17.	2008. 7. 15. ~ 2010. 12. 31.	294,421,541
2010. 5. 31.	2010. 5. 26. ~ 2011. 2. 28.	1,540,000			
2010. 7. 23.	2010. 7. 22. ~ 2011. 2. 28.	6,380,000			

다.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계약의 해지

- 1) 라진건설은 2010. 7. 2. 원고에게 '제①공사에 관하여 당사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 공사를 포기한다.'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0. 7. 8. 라진건설에게 '라진건설의 부도와 관련하여 제①공사에 대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한다.'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.
- 2) 우등건설은 2009. 10. 28. 원고에게 '제②공사에 대하여 당사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 공사를 포기한다.'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, 원고와 우등건설은 2009. 11. 3. 우등건설의 공사포기에 따른 공사타절 정산을 마쳤다.
- 3) 성진이엔씨는 2010. 9. 30. 원고에게 '제③공사에 대하여 당사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 공사를 포기한다.'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0. 10. 12. 성진이엔씨에게 성진이엔씨의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③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.
- 4) 헨디는 2010. 8. 20. 만기어음의 미결제로 인하여 1차 부도처리가 되었고, 헨디의 직원 및 기능인력은 제④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. 이에 원고는 2010. 8. 26. 헨디에게 헨디의 부도로 인하여 제④공사의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제④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.

마. 원고의 각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 등

원고는 2010. 10. 15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각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1,660,760,125원(= 294,421,541원 + 160,443,438원 + 17,782,262원 + 4,136,925원 + 111,523,300원 + 186,058,788원 + 535,200,090원 + 91,901,781원 + 240,790,000원 +

10,582,000원 + 1,540,000원 + 6,380,000원)을 각 청구하였고,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제③보증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중 일부인 416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계약은 이 사건 각 하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라진건설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체하여 제①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그 공사계약해지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고, 우등건설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보증기간 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②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먼저, 라진건설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면, 앞서 본 바와 같이 라진건설이 2010. 7. 2. 원고에게 '제①공사에 관하여 당사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 공사를 포기한다.'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라진건설이 제①공사를 중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음으로 우등건설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면,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등건설은 2009. 10. 28. 원고에게 제②공사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, 원고와 우등건설은 제②공사가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2009. 11. 3. 공사포기에 따른 공사타절 정산까지 마쳤으므로 제②공사는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보증채무 시효소멸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(2011. 5. 24.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,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

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

2) 살피건대, 제①-1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10. 12. 31., 제①-2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11. 3. 31., 제②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11. 3. 31., 제③-1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11. 3. 31., 제③-2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11. 1. 31., 제④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11. 2. 28.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. 2. 16.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.

그러나 한편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. 10. 15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지급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. 3)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의 주채무 시효소멸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채무가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함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.

2) 살피건대,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계약이 이 사건 각 하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그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업체의 원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내용으로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비롯한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 또는 법리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.

그리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업체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손해배상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이고,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계약의 해지일이 그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이라고 할 것이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제①공사계약은 2010. 7. 8.경, 제②공사계약은 2009. 10. 29.경, 제③공사계약은 2010. 10. 12.경, 제④공사계약은 2010. 8. 26.경 각 적법하게 해지되었고, 그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날인, 제①공사계약에 기한 라진건설의 손해배상채무는 2015. 7. 8.경, 제②공사계약에 기한 우등건설의 손해배상채무는 2014. 10. 29.경, 제③공사계약에 기한 성진이엔씨의 손해배상채무는 2015. 10.

12.경, 제④공사계약에 기한 헨디의 손해배상채무는 2015. 8. 26.경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보증금 지급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3) 이에 대하여 원고는, 피고에 대한 각 보증금 지급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한 방식으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한 이상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로 위 각 하도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,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) 결국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(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라진건설 관련 불안의 항변권 주장과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)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정민

판사조용희

판사임미경